

‘시댁식구 며느리 부당대우 혼인파탄 시아버지도 위자료 배상책임 있다’

인천지법

95.
9.23

시집 식구들이 남편과 합세해 며느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시아버지에게도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가사2부(재판장 홍성구 부장판사)는 22일 한아무개(33·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씨가 남편 부아무개(33)씨와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청구 소송에 대해 남편과 시아버지는 원고 한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와 부씨는 이혼하고 부씨는 재산분할금 1천만원과 아이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4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혼인 직후부터 남편과 시집 식구들에게서 욕설과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과 남편 부씨가 산후조리중인 한씨의 뺨을 친정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때린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해 남편과 시아버지가 연대해서 한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씨는 지난 84년 5월 부씨와 결혼했으나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시집 식구들이 학대하자 지난해 2월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김영환 기자